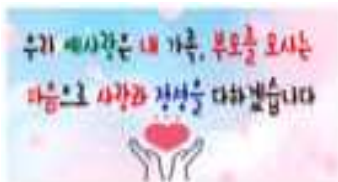


<https://cafe.naver.com/yesarang37>

예사랑 소식통

2026년 10월호



예사랑 실버케어 요양원

병설 주간 보호 / 방문 요양 TEL 042-621-1005



원장님 말씀

안녕하세요!

고유 명절 추석을 보내시며 보름달 감상은 잘하셨나요?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하더니, 어느새 가을을 상징하는 10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람에 따라 3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젊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길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연세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짧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니 하루하루 별 탈 없이 잘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휘둘려 불행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은 빨리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마음에도 여유와 평안이 함께하시고,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

♡ 어르신 **생신잔치**를 **10월 15일 (목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떡과 과일을 준비해서 축하해 드립니다.

♡ 예사랑 실버케어의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0월 일정공지** *

- 10월 15일(목) 생신잔치(가족초청)
※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월 이·미용봉사(요일 변경)

추석 맞이 송편 빚기



풍성한 한가위,
함께 빚은 송편



어르신들과 함께한 추석맞이 송편 빚기



손끝으로
만드는
작은 정성이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빚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곱게 빚은 반죽에 소를 넣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양을 만들며,
어르신들은 서로의 송편을 구경하고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추석의 정취를 느끼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나누었던 시간.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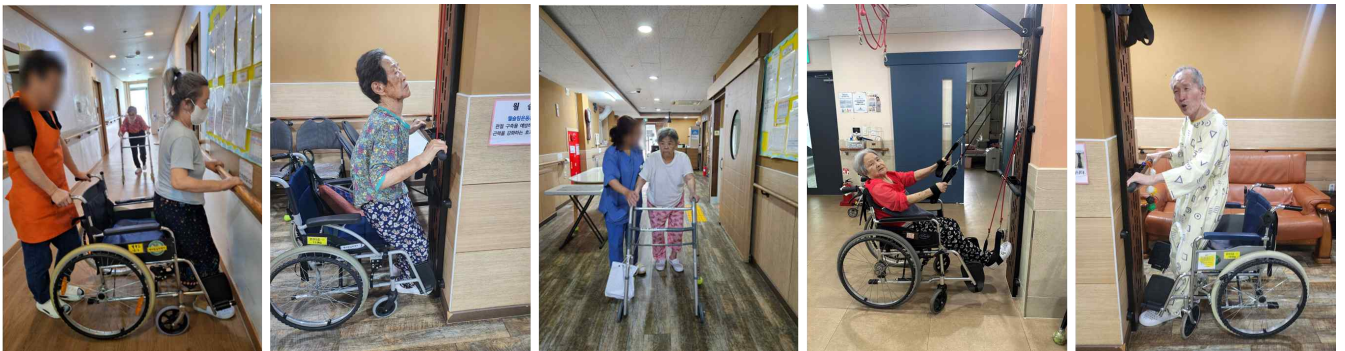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9월 즐거운 시간



본 기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신 잔치와 산책 등 함께 웃고 담소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어드리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큰 정서적 위안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재활 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보행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체계적인 기능 회복 훈련을 실시하여 어르신 개개인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생신잔치



노인인권 & 학대

예사랑실버케어는 어르신의 섬김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어르신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노인학대를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노인학대가 행해질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신고전화	☎ 1577-1389 : 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상담전화	042) 621-1005 (사무실), 010-3342-2293 (권유진 시설장)
	※ 신고 또는 상담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 받습니다.	

- 노인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제55조)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55조의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3)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3)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3)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4)

1. 노인의 인권(권리)이란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로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06)는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를 증진하기 위한 3가지의 권리, 즉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을 제언하였다.

노인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노인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정책적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이행할 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대 국가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정책을 들 수 있다.

2.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언어·비언어적 행위(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 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 기 방 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인권 & 학대

3. 노인의 인권침해

노인인권침해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재정적, 방임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인권침해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인권침해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인권침해,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인권침해까지 포함된다.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인권침해에서부터 넓게는 방임적 인권침해까지 포함되고 있다.

- 1) **정서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모멸, 겁주기, 자존심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어린애 취급, 굴욕, 어린애 취급, 의도적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 안하기, 고립시키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 2) **신체적:** 물리적인 힘·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등
- 3) **언어적:**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 4) **재정적:**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 등
- 5) **방임적:**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4.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안내

- ① **노인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 ②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 교육을 통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노인학대의 주 가해자는 직계가족(아들,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 ③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이 전환이 필요

2) 노인 학대 예방 10가지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대상자를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부양하는 자녀가 부양의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라.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6.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대상자)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려 하지 않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